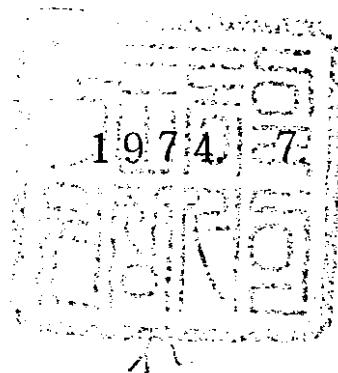


# 東西獨交流事例와 南北韓의 適用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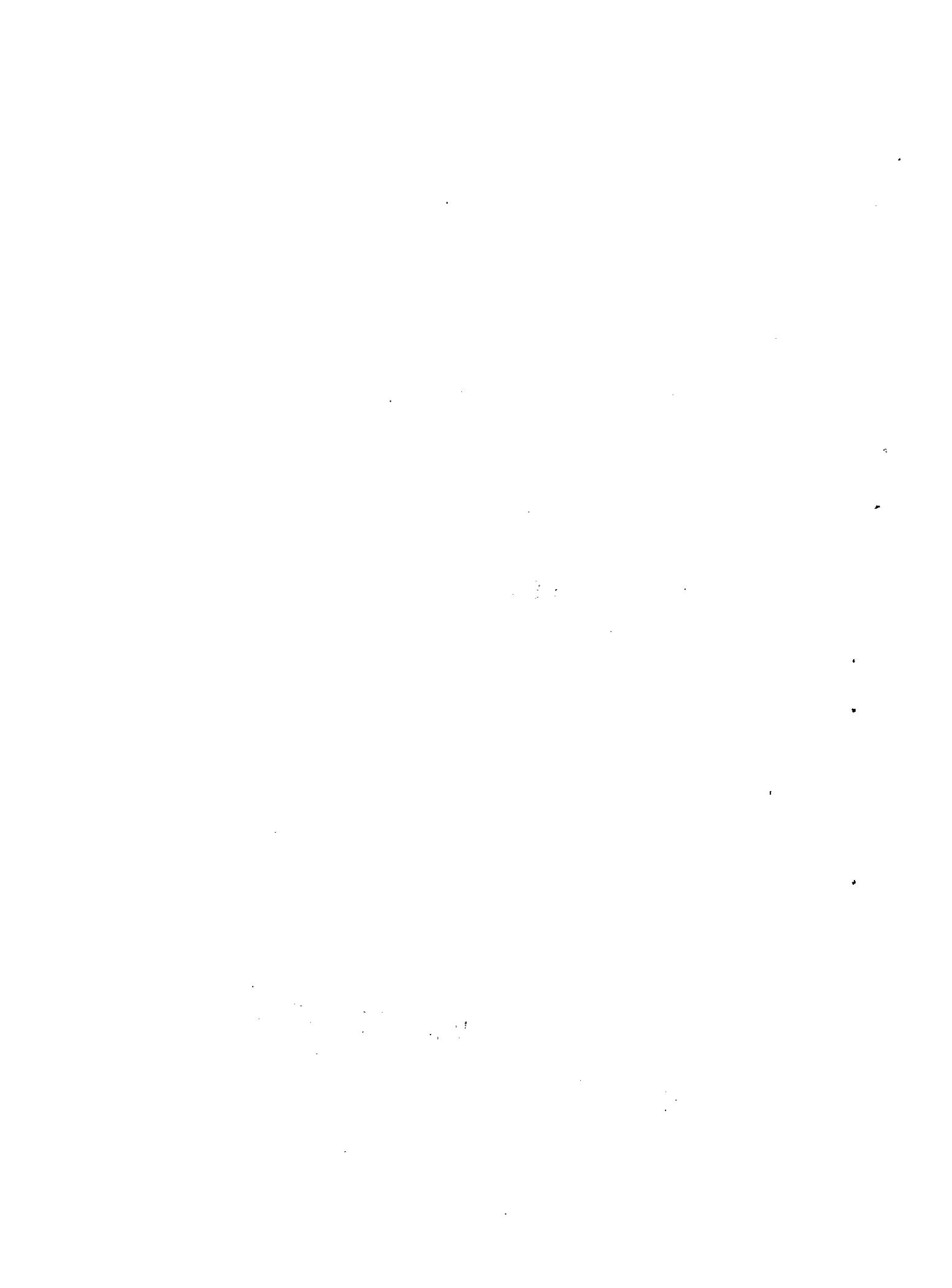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7.

研究機關 : 慶南大學 極東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 廉 弘 喆



## 目 次

総 論 .....	3
第 1 章 東西独 接触事例의 檢討 .....	9
第 1 節 「아데나워」時代 .....	11
第 2 節 「에르하르트」・「키징거」時代 .....	13
第 3 節 「브란트」時代 .....	17
1. 両独間首相 会談 .....	20
2. 独蘇・独波条約 .....	21
3. 東西独基本条約 .....	23
第 2 章 南北韓接触問題 .....	29
第 1 節 第一共和国時代 .....	31
第 2 節 第二共和国時代 .....	33
第 3 節 革命政府 - 第三共和国中期 .....	34
第 4 節 第三共和国後期 - 第四共和国 .....	36
1. 8.15 宣言 .....	36
2. 南北赤十字会談 .....	38
3. 7.4 南北共同声明 .....	39

4 . 6 . 23 平和宣言 .....	40
5 . 1 . 18 不可侵協定체결 提議 .....	41
第 3 章 分断国의 地位에 관한 法的考察 .....	43
第 1 節 西独에 있어서의 分断国의 法的地位에 관한 考察 .....	45
1 . 縮小国家說 .....	46
2 . 核国家說 .....	47
3 . 지붕 (국가) 説 .....	49
第 2 節 南北接触에 관한 法的考察 .....	51
1 . 唯一合法性原則 .....	52
2 . 7 . 4 南北共同声明, 6 . 23 平和宣言等 .....	53
第 4 章 東西独交流事例의 韓半島에의 適用可能性과 限界性 .....	59
1 . 共通点 .....	62
2 . 相異点 .....	62

論

經



## 總論 1)

分斷國의 문제는 國際社會에 있어 새로운 현상의 하나이다. 그 것은 同問題가 源源的으로 二次大戰後의 美・蘇를 頂點으로 한 東西兩陣營間의 對立, 冷戰狀態와 이러한 兩陣營間의 力量均衡政策의 所產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分斷國의 문제는 오늘날 國際社會에 있어 발생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國際法的 地位 또는 性格도 確立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現在 分斷國으로 보통 韓國, 独逸, 越南, 中國을 들고 있으나筆者의 見解라는 法的觀點에서는 中國을 嚴格한 意味의 分斷國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sup>2)3)</sup> 따라서 現存하는 分斷國으로는 韓國, 独逸, 越南으로 限定되게 된다. 이러한 三個分斷國中에서 그 性格上 韓國은 越南에 비해서 独逸과 보다 많은 共通점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은 韓國과 独逸이 共히 分斷의 기원에 있어 「國際型」이고 또한 分斷兩地域間의 関係에 있어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安定型」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越南은 分斷起源이 「內爭型」이며 分斷兩地域間의 関係는 「不安定型」이라는 것이다.<sup>4)</sup>

獨逸은 1945年以後 過渡期의 美・英・仏・蘇 4大国의 分割占領期를 거쳐 1949年 東西 양편에 異質的政治体制의 수립으로국土가 分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制限된 범위이기는 하나 社會文化, 人事交流가 지속되어 왔다. 特히 經濟交流는 政治的接触의 不在現象에도 불구하고 東西獨의 對外貿易에 있어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면서 活潑히 展開되어 왔고 특히 1966年에 西獨에 「키징거・브란트」大聯政이 수립된 以後는 交易量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実情이다.<sup>5)</sup> 이러한 諸分野의 交流가 1972년 5월의 兩獨間一般通行協定과同年 11월의 兩獨間基本條約의 체결로 앞으로 더욱 活潑하여 자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政治的側面에서는 西獨에 依한 東獨不承認 孤立化手段인 「할슈타인」原則이 大聯政의 수립과 함께大幅修正 緩和되었다가 1969年 社民黨의 「브란트」政權의 수립과 함께 폐기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第二次에 걸쳐 兩獨首相間의 会談이 開催되었고 以後에도 兩國間의 政治的接触은 公式, 非公式의 으로 지속되서 오다가 1972年 5월에는 兩獨間의 最初의 國家間條約이라고 하는 東西獨一般通行協定이 正式調印 되었고同年 11월에는 基本條約이 체결된 바 있다. 以後 同條約에 의거하여 1973年에 兩獨이 「유엔」에 同時加入되었으며 今年 6월에는 東西獨에 각己 「通商代表

部」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上述한 바와 같이 西獨은 分斷狀態의 解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終結을 위해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의 諸分野에서 東獨과 상당히 實質的이고 活潑한 接觸을 展開하여 온 결과로 이러한 兩獨間의 接觸事例가 余他 分斷國家에 依한 分斷문제 处理에 있어 매우 主要한 指針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韓國의 경우는 独逸과 몇 가지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東西獨의 接觸事例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韓國政府에 依한 分斷問題 处理에 있어 매우 具体的인 方向을 提示해 주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本稿는 東西獨交流事例의 韓半島에의 適用可能性에 관한 檢討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原則적으로는 東西獨間에 전개되어 온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의 諸分野의 交流事例를 검토하고 이러한 具体的인 交流事例의 韩半島에의 適用可能性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稿에서의 檢討對象은 政治的 法的側面에 局限하려고 한다. 그것은 余他分野에 대한 檢討가 重要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現在 韓國의 与件으로는 政治的 接觸보다 「人道的 非政治的」 分野에 있어서의 斷進的인 接觸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들 分野에 관

한 고찰이 보다 重要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稿의 考察對象을 法的 政治的側面에 局限시키는 것은 余他分野에 관해서는 同分野에 관해 쓰여진 몇몇 論文의 程度를 넘어 설 수 없다는 필자의 能力界限의 認識에 基因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法的 政治的觀點에서의 分斷國問題는 筆者の 見解로는 그 本質에 있어 다음의 한가지 문제에 귀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分斷국이 最少限 分斷國의 地位에 남아 있으면서 東西 或은 南北으로 分斷된 兩政治秩序間의 接触을 지속하여 分斷의 解消, 解決,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終結을 결과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달리 表現하면 分斷된 兩政治秩序間의 接触이 궁극적으로 國際法上 完全한 二個의 主權國家 生成이라는 否定的인 結果를 慈起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分斷國에 있어서 分斷된 兩政治秩序間의 궁극적인 統一과 마찬가지로 兩政治秩序가 完全한 主權國家로 변모할 때는 分斷國의 문제는 이미 存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上述한 觀點에서 筆자는 東西獨間의 政治的 接触事例와 南北韓間의 接触事例를 檢討하고 다음에 이러한 接触의 背景 또는 根柢가 되는 法理論을 檢討하려고 한다. 그리고 끝으로 위에서 考察한 内容을 배경으로 하여 東西獨交流事例의 韓國에의 採用可能性 또는 限界에 걸 토함으로써 本稿를 끝내려고 한다.

## 第 1 章 東西獨 接觸事例의 檢討



## 第1章 東西獨 接触事例의 檢討

兩獨間의 政治的 接触關係는 一般的으로 三時期로 区分하여 考察 할 수 있는바 그것은 「아데나워」時代, 「에르하르트」・「키징거」時代 및 「브란트」政權時代인 것이다. 처음의 二時代에 있어서 原則 的으로 東獨의 政治的 接触이 不在하였다는 점어서는 일용 兩時代 가 共通하나 「아데나워」時代가 東獨에 대한 関係에서 그의 承認, 孤立化政策의 超強硬時期라면 「에르하르트」・「키징거」時代는 이러한 硬直된 對東獨政策이 修正・緩和되면서 「브란트」時代로 推移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時代라 할 것이다.

### 第1節 「아데나워」時代

1949年에 수립된 独逸聯邦共和国(西獨)의 初代首相이 된 「아데나워」의 基本政策은 戰後冷戰狀態에 있어서의 独逸의 再建은 西方陣營파의 긴밀한 政治的 軍事的 紐帶과 独逸의 再武装의 基盤위에 서만 可能하다는 所謂「힘의 政策」에 立脚한 것이었다. 이 時期에 西獨은 1954年 1月의 「倫敦」九個国会談以後 同年 10월 23일의 「파리」條約에 依해서 西方三大國에 依한 西獨地域에 대한 占領狀態 를 終結시키고 主權을 回復하였으며 또한 同條約에 依拠하여 1955年

西欧陣營의 軍事同盟体인 北大西洋條約機構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加入하였다. 同時期에 있어 西独의 對東獨 및 軍事的紐帶를 배경으로 하여 東獨의 存在를 否認하고 二次大戰後 「포랜드」에 빼앗긴 「오데르·나이세」線以来의 失地回復을 目標로 한 것이었다. 同時期에 있어 東獨不承認政策의 法的 外交的表現이 곧 「할슈타인」原則인 바 同原則은 西獨과 이미 國交關係에 있는 第三國이 東獨과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경우 이는 独逸의 分斷狀態를 同定化한다는 意味에서 独逸國民의 決定的利益에 反하는 非友好的行為로 간주되어 이러한 國家와는 궁극적으로는 外交關係를 斷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할슈타인」原則이 1955年에 公式外交政策으로 公表된후 西獨政府는 1957年에는 「キュ바」와 1963年에는 「유고」와 外交關係를 斷絕했는데 그 것은 물론 이를 國家가 東獨을 송인했다는 理由에서 이었다. 「할슈타인」原則은 法的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原則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① 独逸帝國의 存續性 ② 独逸領土의 穩全性 ③ 独逸內에 二個國家의 存在의 否認이다. 이를 조금 부연하면 独逸帝國은 1945年 4大国에 依한 独逸分割占領에도 不拘하고 法的으로는 消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독일은 1937年에 確定된 領土의 토대 위에서

그대로 存續하며 西獨은 이러한 독일을 國際的으로 代表할 수 있는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것이다.

이러한 「할슈타인」原則이 1955年에 公表된後 1968年에 事實上 滅棄될 때까지 단一個의 西方陣營에 속하는 国家도 東獨을 承認하지 않았음을 特記할만한 事實이다. 다만 同原則이 公式 外交政策으로 公表된 1955年에 西獨政府는 쏘련은 独逸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責任을 지고 있는 4大國의 一員이라는 理由로 同국과 外交關係를 수립했다는 事實은 同原則의 内在的인 限界性 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第二節 「에르하르트」・「키징거」時代 (1963-1969)

「에르하르트」・「키징거」時代는 「아데나워」時代와 마찬가지로 基民党政權의 長속이라는 점에서 「아데나워」時代의 基本政策인 「할슈타인」原則은 적어도 公式的으로는 그대로 維持되었다. 그러나 同原則은 이미 「에르하르트」時代에도 内容의in 修正을 보게되어 同時代에 西獨政府는 東獨을 迂迴하여 東歐諸國과 활발한 接触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同時代의 後半期인 「키징거・브란트」大聯政時代에 이르러서는 「할슈타인」原則은 公式的은 아니라해도 実質上으로 폐기되게 되는 것이다.

## 1. 「에르하르트」時代

1963年 「에르하르트」가 首相에 就任한후 「슈피어」外相은 「아데나워」時代에 구축한 富強한 經濟力を 背景으로 東歐와 활발한 經濟, 文化交流를 展開하게 되었는바 이 時期에 西獨을 「풀랜드」(1963.9.18), 「불가리아」(1964.10.19), 「헝가리」(1964.10.19) 및 「루마니아」(1965.5.6)와 각各 通商協定을 締結하고 相互間에 通商代表部를 設置하였다. 이러한 東歐諸國과의 활발한 經濟交流에 즈음해서 「슈피어」外相은 議會에서의 한 演說에서 「할슈타인」原則은 教理가 아니므로 이 政策은 實質的 基礎위에서 適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西獨은 이미 蘇聯과 修交했으므로 東歐諸國과도 修交할 수 있을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이러한 「슈피어」外相의 發言은 「할슈타인」原則의 內容의in 修正이 可能하고 또 그에 대한 用意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이는 以後 「키징거·브란트」 大聯政時代에 단행된 「할슈타인」原則의 事実上의 廢棄를 為한 준비단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時代에 한가지 特記할 것은 1966年 2月 7일자의 東獨共產黨의 提議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던 西獨社民黨과의 演士交換計劃인 바 同計劃은 결국 結實을 보지 못했으나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基民黨과 社民黨의 大聯政이 可能해 졌던 것이다.

## 2. 「키징거·브란트」大聯政時代

1966년 12월 基民黨과 社民黨의 大聯政이 수립되어 基民黨의 「키징거」가 首相으로 社民黨의 「브란트」가 外相이 됨으로써 東獨을 除外한 對東歐接觸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갔다. 이러한 東歐圈에 대한 積極的 接近政策은 다음의 두가지 基本的問題에 대한 西獨國民의 伝統的 思考方式의 變化에 그 基礎를 둔것이었다.

그것은 우선 東獨의 팔복한 만한 經濟成長으로 인해서 從來 그 存在를 無視해 오던 態度를 止揚하고 이에 直面해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独逸國民의 大多數가 西方陣營에 依한 独逸統一을 為한 努力이 實際 実効性이 欠如되어 있음을 점점 더 確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二大要素의 結合으로 所謂 「東方政策」(Ostpolitik)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와 関聯해서當時外相이던 「브란트」는 “우리의 政策은 变했다. 從前까지는 우리는 独逸統一 以前에는 東歐諸國과 紐帶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우리는 統一問題에 앞서 于先緊張緩和를 為해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라고 宣言한 바 있다.

이 時期에 西獨은 「루마니아」(1967.1.27)와 国交를 수립하고 「유고」(1968.8.3)와는 斷絕되었다. 国交를 再開하였으며 「체코」(1968.8.3)와는 通商協定을 締結하였다.

이러한 西獨政府의 活潑한 對東歐圈接近政策에 当面해서 蘇聯은  
同地域에서의 自國의 우월적인 地位에 위협을 느낀나머지 1968년  
8월 「체코」를 武力侵攻하고 「본」政府를 맹렬히 공격하면서 西  
獨의 「民族主義的 復舊主義」의 危險性을 경고하면서 一定한 情勢下  
에서는 對西獨 武力干渉權을 主張하면서 實質上의 東方政策의 中斷  
을 要求하게 된다.

이 時期에 있어 한가지 特記할 만한 것은 西獨政府에 依한 「할슈  
타인」原則의 廢棄와는 正反對로 東獨政府가 所謂 「울브리히트」原  
則을 公表하게 되었다는 点인데 同原則은 東獨과 国交關係에 있는  
第三國에 依한 西獨파의 모든 接近措置는 東獨으로서는 非友好的行  
為로 간주한다는 것을 内容으로 하는 것이다.

蘇聯에 依한 「체코」의 武力侵攻과 西獨의 東方政策에 대한 위  
협적인 非難으로 東方政策은 一旦 中斷되었으며 西獨內에서는 蘇聯  
의 事前諒解 없이는 東歐에 대한 本格的인 接近은 不可하다는 認  
識을 가지게 되었다. 以後 1969年 7월 西獨政府가 蘇聯에 대  
하여 武力使用拋棄案을 提議하고同年 9월에 蘇聯이 이에 대해  
協議할 用意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一時 中斷되었던 對東歐接觸은  
再開되었다.

이 時代에 있어 「루마니아」「유고」와의 国交수립 또는 再開

로 「할슈타인」 原則은 事實上 廢棄된 것이었으나 東獨不承認 아래는  
基民黨의 伝統을 계승한 「키징거」 首相은 이에 대한 公式的廢棄措  
置는 하지 못하고 있다.

### 第 3 節 「브란트」 時代 ( 1969.10 )

1969年 10月의 總選 結果 社會黨의 「브란트」 는 自民黨의 「셀」  
과 聯立內閣을 구성하고 首相에 就任하였다. 以前의 大聯政時代에  
外相으로서의 過渡期를 거친 「브란트」 는 이제는 西獨政府의 首班으  
로서 그의 基本政策인 東方政策을 보다 積極的으로 推進할 수 있  
게 되었다.

「브란트」 時代에 있어서의 東方政策의 基本的 特징의 하나는 그  
以前에는 비록 蘇聯을 包含한 東歐와의 接触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해도 東獨은 이에서 原則的으로 除外되어 있었는데 「브란트」 時代  
에 이르러서는 東獨과도 直接的이고 上位水準級의 政治的接触이 전  
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両獨間의 政治的接触의 主要한 結果가  
両獨間 一般通行協定； 基本條約등임은 물론이다.

「브란트」 首相은 東西獨關係에 대해 그의 就任演說에서 「大擔  
하고 新鮮한」 새로운 政策을 開明하였는 바,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

(1) 独逸内에 二個國家의 存在는 認定하나 이는 東獨에 대한

國際法上의 承認이 아니라 國法上의 承認이다.

(2) 兩獨은 相互 外國이 아니라 特殊關係이며 他國과의 条件과

同一한 効力を 가지는 武力行使拋棄條約을 東獨과 締結한 用意  
가 있다<sup>7)</sup>

이렇게 「브란트」 수상이 公式的으로 独逸内 二個國家 存在를 認定  
하게 되자 그翌日인 10月 29日 議會에서 「헬」 外相은 “次  
後로는 어떠한 国家에 依한 東獨의 承認도 西獨에 依해 非友好的  
行為로 看做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宣言함으로써 「할슈타인」 原  
則은 公式的으로 廃棄되게 되었다.

1955年 東獨에 대한 不承認 孤立化의 手段으로 천명된 以來  
15年間 적용되어 온 「할슈타인」 原則이 1969年 10月 公式的으  
로 폐기되게 된 要因을 分析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① 同原則이 蘇聯을 適用對象에서 除外한 結果 始初부터 이미  
基本的인 限界性을 内包하고 있었다는 点

② 同原則의 實効性을 保障하기 為한手段으로서의 後進國에  
대한 經濟協助, 技術協助등의 方式의 限界性

③ 西獨에 依한 「이스라엘」 承認措置로 伝統的으로 友好的이  
던 「아랍」 諸國의 敵對感情 挑發

④ 西獨國民에 依한 西方陣營의 独逸統一努力의 非現實性, 非効率  
性의 離信

⑤ 西獨政府의 東歐國과의 積極的인 政治的 經濟的交流 意思

以上의 諸要因에 当時の 美蘇接近에 依한 一般的 緊張緩和 (détente) 潮流와 「브란트」政府의 東方政策을 보다 積極的으로 推進하려는 基本政策이 加勢되어 「할슈타인」原則의 公式廢棄를 加速化하였다 할 것이다。<sup>8)</sup>

「브란트」首相은前述한 바와같이 그의 就任演說에서 東獨關係에 관한 基本政策을 밝히고 나서 1970년 1월 11일의 年頭敘書 (Zur Lage der Nation)에서 「베르лин문제, 東獨문제 기타 東歐 와의 國係에 관해 다음의 다섯가지 점을 천명하였다.

- ① 「獨逸에 대한 四大國의 責任」, 「베르린의 特殊한 地位와 西獨과의 紐帶關係」,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은 아니라 差別 없는 政府次元에서 両獨逸國家間 協同을 위해 案約을 締結할意思」가 있고 「相互間에 武力拋棄協定」을 맺을意思가 있음을 表明
  - ② 既存同盟關係의 解体는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自決權과 欧羅巴 秩序內에서의 民族的 統一性과 平和追求 決意를 表明
  - ③ 大聯攻下의 經驗에 비추어 蘇聯과 「폴랜드」와의 武力行使拋棄協商 提議
  - ④ 「헝가리」, 「체코」와의 國係改善意思 表明
- 「브란트」首相은 특히 東獨에 대한 西獨政府의 基本方針은

- ① 兩国家는 独逸国民의 統一性을 維持할義務를 치고 서로가  
外國이 아니며,
- ② 그 外에는一般的으로 承認된 国家間의 法 (國際法)原則이  
効力を 가져야 한다고 宣言하였다.

「브란트」首相의 年頭敘書에서 開明된 위의 基本政策의 大部分은  
以後 二次에 걸친 両独首相會談을 거쳐 独蘇條約 (1971.8.12), 独  
波條約 (1970.11.1), 四大國 「베르린」協定 (1971.9.3), 両獨間 一  
般通行協定 (1971.12.17) 으로 具体化 되어 갔고 끝으로 両獨間基  
本協定 (1972.11.8)의 체결로 그 一段落을 지었다. 다음에서는  
両独首相會談, 独蘇・独波條約 및 両獨間基本條約에 관해서만 考察하  
기로 한다.

#### 1. 「에어푸르트」・「카펠」 東西独首相會談 (1970.3.19 및 70.5.21)

「브란트」首相이 「独逸内 二個國家」 存在를 公式으로 인정하  
자 東独의 「울브리히」党首는 1970년 1월 «両獨政府當局이  
東独을 正式으로 承認해야 한다는 前提를 固執하지 않고서도 双方  
의 基本的인 問題를 論議할 用意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両獨間  
의 対話의 素地가 마련되어 同年 3월 19일에는 東独의 「에어푸

르트」에서, 70년 5월 21일에는 西獨의 「카펠」에서 两次에 걸친  
両獨間 首相会談이 開催되었다.

西獨은 一次会談에서 両獨이 獨逸国民의 一体性을 強調하는 義務  
를 負担하고 両國은 相互間に 外國이 아니라는前提下에서 國際法  
上 一般原則에 依한 両獨關係의 規制, 特히 모든 差別待遇의 撤除,  
領土權의 尊重, 紛爭의 平和的 解決義務를 内容으로 하는 提案을  
하였으며 二次会談에서는 所謂 20個項으로 알려진 提案에서 上  
述한 事項 以外에 武力使用拋棄, 西獨에 依한 全獨逸代表權拋棄, 東  
西獨의 國際機構 同時加入 등의 提案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東  
獨側은 討議에 앞서 東獨의 國際法上 承認을前提条件으로 固執함  
으로써 両次의 東西獨 首相会談은 결국 구체적인 成果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両獨間의 貿易, 旅行, 電信등의 實質的分野에 있어서의 協  
力關係는 70년 11월부터 始作된 実務會談을 통해 착실히 進展되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72년 5월 26일 両獨間一般通行協定이 체  
결되게 되었던 것이다.

## 2. 獨蘇條約, 獨波條約

### (1) 獨蘇條約

1970年 8月 12日 両國에 依해 正式 謂印皂 同條約의 骨子

는 다음과 같다.

① 両当事国은 欧洲의 平和關係 增進을 위하여 欧洲의 현상에

### 서 출발

② 紛争의 平和的解决 및 武力使用拋棄

③ 欧洲諸國의 現國境線 (「オーベ르·나이세」線 包含)의 尊重

및 그의 不可侵原則

### (2) 独波條約

1970년 12월 7일 西獨과 「풀랜드」間に 正式調印된 同條約  
의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① 「오베르·나이세」江 境界線을 「풀랜드」의 西部境界線으로

認定. 이 条項은 독일이 二次大戰後 「풀랜드」에게 상실한

「오베르·나이세」線의 以東地域에 대한 독일의 領土權主張을

正式으로 포기 한다는 것이다.

② 現在로 纏來에 相互 領土要求를 하지 아니한다.

③ 紛争의 平和的解决 및 武力使用拋棄

위의 両大條約의 締結로 蘇聯을 非敵性化하고 同國을 包含한 東歐  
諸國의 西獨의 民族主義의 軍國主義 復活에 대한 疑懼心을 一旦  
를식시킴으로써 「베르лин」문제에 관한 蘇聯의 양보를 얻고 東歐에  
대한 政治的 經済的進出의 確固한 基盤을 구축하였고 또 次後の

東西獨基本條約의 成功的 締結을 為한 基礎를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위의 独蘇・獨波條約의 締結 以後에 1971年 9月3日에는 西「베르린」의 法的地位와 西「베르린」市民의 東「베르린」 및 東獨旅行에 관한 規制를 내용으로 하는 四大国「베르린」協定이 仮調印되었으며 同協定의 細部事項을 規定한 西獨과 西「베르린」, 西「베르린」과 東獨間의 通行協定이 1971年 12月17日에 兩獨間에 締結되었다. 또한 1972年 5月26日에는 兩獨間의 最初의 政府間條約이라고 일컬어지는 兩獨間一般 通行協定이 締結되었으나 이들은 本稿에서 設定한 考察의 対象밖이므로 이에 對한 내용적인 檢討는 하지 않기로 한다.

### 3. 東西獨基本條約

同條約은 1972年 11월 8일 東西獨의 全權代表間에 仮調印되고同年 12월 21일 正式調印된 후에 1973년 6월 21일 그의 批准書가 交換됨으로써 發効되었다.

同條約의 第8條에 따라 今年 6월 20일 西獨의 首部 「본」과 東獨首部 東「베르린」에 各己 「常駐代表部」가 設置되었다.

同條約은 西獨의 「一民族・二國家」主張과 東獨의 「二民族・二國家」主張의 對立에서 그 中間的妥結策이 모색된 것이라 하겠다. 即 西獨이 独逸民族의 單一性의 前提下에서 独逸內에 存在하는 二個國家

는相互外國이 아니라는立場을 취하고 있는데反해서東獨은  
1945年以來獨逸民族의單一性은 상실되어獨逸內에는相互間에  
完全히獨立된二個의主權國家가形成되었다는立場을 견지하고  
있는바兩獨間基本條約은 이렇게 서로根本적으로相衡되는두가  
지立場의中間的解決策을 모색한것이라하겠다.

다만同條約의締結以後에도兩獨은上述한基本立場을 그대로  
固守하고 있는결과로앞으로同條約의解釈,適用에 있어許多한  
難題가제기될것으로보인다.

兩獨間基本條約의以上의予備的檢討에이어다음에同條約의主  
要한內容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同條約은前文에서「條約締結双方은...民族問題...에대  
하여見解의差異가있음에도不拘하고」라고규정하고있어獨逸  
民族에관한西獨의單一性主張과東獨의「二民族」主張間의根本  
的對立은未解決의문제로남아있음을露呈하고있다.

다음全部10條로된本文의骨子는 다음과 같다.

**第一条：** 同等한權利위에서의相互間의善隣關係增進

**第二条：** 모든國家의主權・平等・獨立・自主・領土保全의尊重

人權保護 및 差別待遇禁止

**第三条：** 紛爭의平和的解決 및 武力使用拋棄

両獨間 境界線의 不可侵原則 및 領土保全의 尊重

第四条：独逸에 대한 单独代表權拋棄

第五条：歐洲國家間의 平和關係增進

第六条：国内外問題에 있어 双方의 獨立과 自主性 尊重

第七条：双方關係 正常化 過程中 現実的인 人道的問題 妥結  
經濟・文化・通行・郵便・通信등의 諸分野에 있어서의 協  
力增進을 위한 協定 締結

第八条：両獨間 「常駐代表部」 交換

第九条：이미 締結한 条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第十条：批准後 効力

以上의 十個條項中 本稿와 関聯하여 主要한 것은 第四条와 八条  
인 바, 이에 대해서는 좀더 부연하기로 한다.

우선 第四条는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은 両國의 어느  
一方이 相對方을 代表하거나 또는 自己의 명의로 相對方을 代身하  
여 行動할 수 없다는데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法理論的으로는 核國家理論 (Kernstaattheorie), 外  
交政策上으로는 「할슈타인」原則의 協定에 依한 公式拋棄를 意味한  
다. 그것은 「할슈타인」原則의 法理論의 根柢는 核國家說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同條로 해서 従來 東西獨의 「유엔」同時加入

에 대한 基本的 障碍物이 除去되게 된 결과로 1973년 両独은 「유엔」에 同時加入하게 되었다.

基本條約 第八条는 東西獨은 相互間に 「常駐代表部를 交換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従来 東獨이 両獨은 相互 主權의 인 独立國이라는 立場을 捷지하고 있었고 基本條約의 締結로 해서 西獨으로부터 國際法上의 國家承認을 獲得하려던 것이 그 基本政策 이었다는 점을勘案하면 第八条는 西獨의 主張이 보다 強力하게 반영된 규정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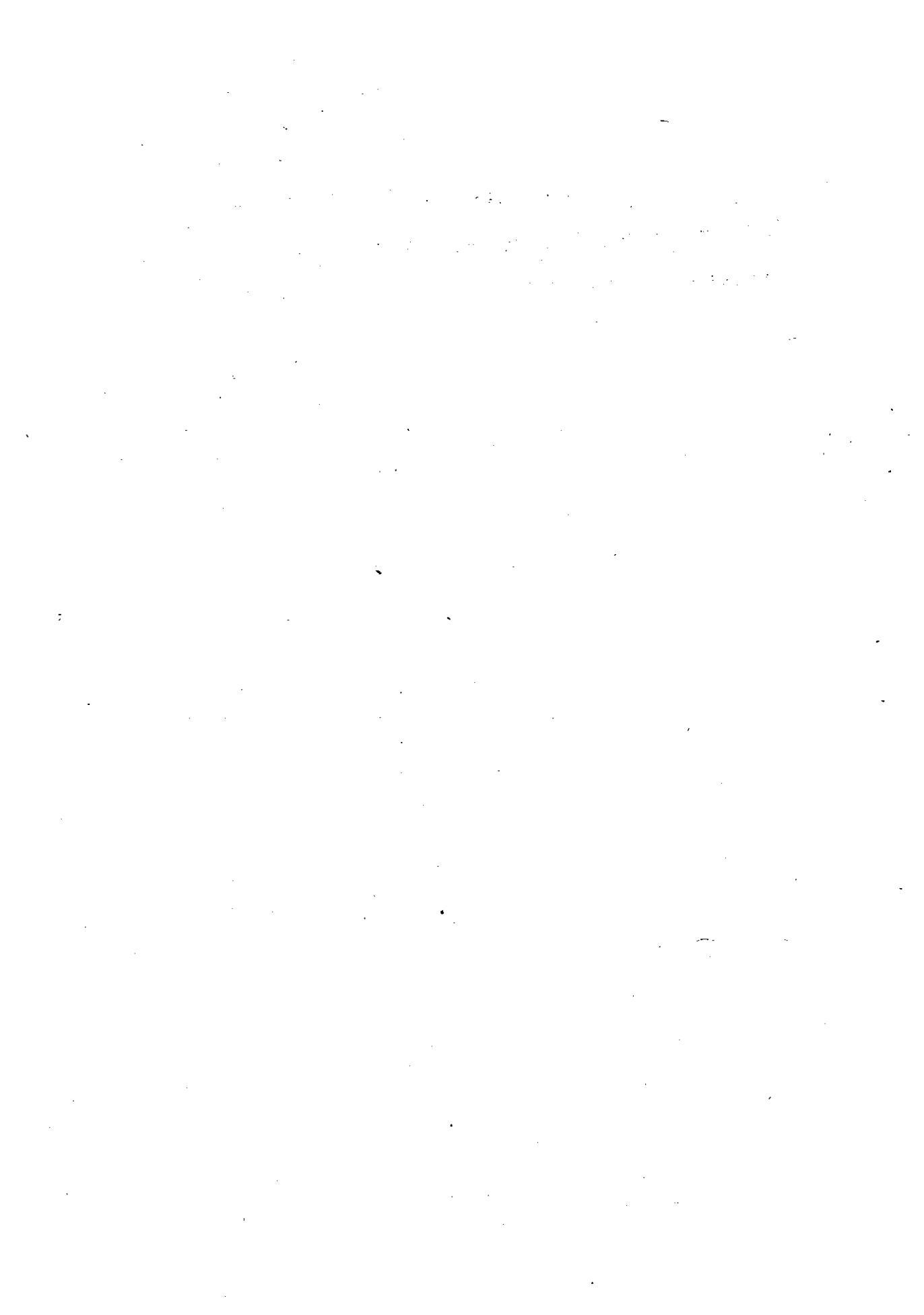
그것은 同條에 「外交關係」, 「外交使節」등의 用語代身에 「常駐代表部」라는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東西獨間의 関係는 敵格한 意味의 外國間의 関係가 아니고 「特殊한 関係」라는 점이 間接的인기는 하나 比較的 強力하게 示唆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同條는 尚後 東西獨은 相互間に 外國이 아니라는 西獨政府의 主張에 대한 強力한 論拠가 될 것이다.

両獨間基本條約에 있어 끝으로 한가지 留意할 것은 同條約이 分断된 두나라間의 관계에 관한 것이면서도 両獨間의 統一에 관해서는 전혀 言及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아마도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는 統一문제는 根本적으로 4大国의 責任과 権利이며 両獨이

自主的으로 決定할 수 없는 것이라는 両獨間의 궁극적으로 合意의  
默示的으로 表示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 第2章 南北韓接觸問題



## 第2章 南北韓 接觸問題

韓半島에 있어 南北間의 接觸이 始作된 것은 1971年 8月 大韓赤十字社 総裁의 北韓에 대한 「南北間의 離散家族 찾기」 운동에 이은 南北赤十字會談에서 비로서始作된다. 그러나 南北接觸 以後의 統一問題에 關한 大韓民國의 基本立場을 理解하기 為해서는 接觸 以前의 基本政策의 檢討가 필히 先行되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第1共和國時代까지 소급해서 考察하기로 한다.

### 第1節 第1共和國時代

2次大戰後 韓半島에 대한 軍事占領國이었던 美·蘇가 韓半島問題處理에 관한 궁극적인 合意를 보지 못하고 1945年 美蘇共同委員會가 決裂하자 韓國問題는 「유엔」에 上程되었다. 以後 南韓地域에서는 「유엔」總會의 決意에 따라 「유엔」臨時韓國委員團의 監視下에 選舉가 実施되었다. 그 결과 制憲議會가 구성되고 同議會는 遷法을 制定하고 그에 依拠하여 政府를 수립한 후 1948年 8月 15일을 期해 한국의 独立를 内外에 宣布하였다.

이에 紹음하여 「유엔」總會는 同年 12月의 한 決意에 依해 大韓

民國政府가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라고 宣言하였다.

이에 대하여 北韓은 同年 8月 25日의 「選舉」에 '의해서 所謂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이라는 政治集團을 구성하여 同集團이 韓國 全体를 代表한다고 主張하게 되었다.

6.25 事變前까지 北韓側은 몇 차례 統一問題에 관한 提議를 했으나 大韓民國은 唯一合法政府의 地位에서 「유엔」監視下에 北韓地域 단에 選舉가 實施되어 그 결과가 大韓民國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基本政策으로 하고 있었다.

6.25 事變後 1954年 「제네바」에서 開催되었던 政治會談에서 卞榮泰外務長官은 統一問題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인 方案을 提示하였는 바,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

① 統一獨立 民主韓國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엔」決意에 의거하여 「유엔」監視下에 南北韓에서 大韓民國의 憲法節次에 따라 自由選舉를 實施한다.

② 全韓國議会의 議員數는 全韓國의 人口에 正比例한다.

③ 大韓民國의 現憲法은 全韓國議会가 修正하지 않는 한 계속 有効하다.

위의 提案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性 基礎위에

서 「유엔」監視下의 土着人口比例에 依한 南北韓総選舉 方式이라 하겠다. 이러한 提案에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同方案이 徒來의 北韓地域만의 選舉方式 代身 南北韓総選舉 方式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제네바」政治會談이 決裂된 결과 韓國문제는 다시 「유엔」의 所管문제로 환원되었고 以後 李承晚政府의 統一方式은 6.25 事變前의 方式인 「유엔」監視下의 北韓地域만의 自由選舉로 一貫되어 왔다.

## 第 2 節 第 2 共 和 國 時 代

3.15 不正選舉로 인한 4.19 学生義挙로 李承晚政權이 没落하고 以後 7.29 選挙의 결과 張勉을 政府首班으로 하는 第 2 共和國이 탄생되었다.

이 時代에 北韓은 聯邦制를 核心으로 하면서 多方面에 걸친 南北交流를 提議하므로써 所謂 「統一攻勢」를 取하고 있었다. 南韓에서도 統一問題는 主로 政黨, 学生들에 依해서 比較的 活潑히 論議되고 있었다. 그러나 当時에 公式的인 統一方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1960年11月12日 第5代国会에서 決意된 統一方案

은 徒來의 政策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유엔」監視下에 人口比例에 따라 南北韓에 自由選舉를 實施한다는 것이었다. 이것 은 1954년에 「제네바」政治會談時에 提議된 方案과 内容적으로同一한 것이다. 이렇게 第2共和國時代에도 徒來의 統一方案을 推す하고 어떠한 「大擔하고 新鮮한」 方案을 採用하지 않았음은 당시의 不安한 社会的 政治的 条件下에서는 賢明하고 現實的인 처사였다고 할 것이다.

### 第3節 革命政府 - 第3共和国中期

#### 1. 革命政府時代

5.16 軍事革命에 依해 張勉政權이 무너진 후 軍事革命委員會는 六個項目의 革命公約을 發表하였는 바 그 第三項은 「民族的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を 集中한다」라고 宣言하고 있다. 이는 國土統一을 為해서는 먼저 自体의 實力を 增大해야 한다는 「先建設・後統一」 政策인 것이다. 이러한 基本方針에 立脚하여 開明된 最初의 統一方案은 金弘奄 外務長官의 성명에 나타나고 있는 바 同聲明은 「우리는 武力에 依する 統一을 원하지 않으며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을 追求하며 國際

聯合監視下의南北韓總選舉를 強調한다고 宣言하고 있다. 이에  
한 金外務長官의 統一政策은 同年 6月 25日字의 朴正熙 最高會議  
議長의 声明에 依해 再確認되었다.

以後 朴正熙議長은 年頭敎書, 声明, 談話 등에서 祖國統一은 共產  
主義와 對決하여 民主主義의 勝利로서 成就해야 하는 것 이니만큼  
統一의 길은 祖國近代化에 있고 近代化는 經濟自立에 있음을 強調  
함으로써 統一의 基本方針인 「先建設・後統一」의 내용을 보다 具  
体的으로 친명하였다.

## 2. 第三共和國初期～中期

1963年 1月의 民政移譲公約의 實現으로 1963年 12월 17  
일 第三共和國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第三共和國時代에도 그 中期  
까지는 「先建設・後統一」의 基本方針에 立脚하면서 統一方案은 如  
前히 「유엔」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에 依한 南北自由選舉의 實施이  
었다.

결국 革命政府에서 第三共和國 中期까지의 統一方案은 從來의 方  
案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었으나 그를 보다 現實的인 것으로 하  
기 위해서 自體의 實力培養에 力點을 둔 時代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第4節 第三共和国後期 - 第四共和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第三共和国 中期까지는 統一方案은 原則的으로 伝統的方案의 계속이다. 그러나 70年代의 統一方案은 徒來의 그것에 비해 전혀 면모를 一新한 「新鮮하고 大擔한」 政策으로 나타난다. 이를 그 始發点인 1970年 朴正熙大統領의 8.15宣言에서 부터 檢討하기로 한다.

##### 1. 8.15宣言

70年代에 들어서서 급작스럽게 美・中・日・中の 接近으로 급변하는 國際情勢와 접요하게 反復되는 北韓의 平和攻勢에 能動的으로 対処하기 為해 取해진 同宣言은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完全히 새로운 転換점을 이루는 것이다.

同宣言의 内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北韓은 武裝共匪南派 등의 모든 戰爭挑發行為를 即刻中止하고 소위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에 의한 大韓民国의 전복을企圖해 온 종전의 態度를 완전히 抛棄하겠다는 점을明白하게 内外에 宣言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踐해야 한다.
- ②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이 受諾 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 明白

하게 確認될 경우에는 나는 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造成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놓인 人為的障壁을 段階的으  
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의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음을 밝힌다.

③ 北韓이 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平和를 위한 「유엔」의 努  
力を 인정하고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受諾한다면 「유  
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이 參與함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이다.

④ 北韓에 대해 더 이상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회생시키  
면서 戰爭準備에 풍분하는 罪惡을 犯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경쟁·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体制가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條件  
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証하는 開發과 建設의 創造的  
競爭에 나설 用意가 없는가를 물고 싶다.

이 宣言은 오랜대 北韓에 대해 武力赤化統一論의 포기를 催迫하  
고 이러한 条件이 充足되는 경우 祖國의 궁극적인 통일을 為해  
人道的問題 및 보다 높은 次元의 문제의 해결을 為한 提案을  
할 用意가 있으며 궁극적 統一時까지는 平和的共存과 競争을 하가  
는 것이다.

이宣言은 以後의 「南北韓 가족찾기」 운동, 「7.4 共同声明」, 「6.23宣言」 등의 可能性을 示사한 것으로 그意義는 매우 크다 한 것이다. 또한 同宣言은 南北韓接觸에 관한 南韓의 基本的立場을 밝힌 것으로 以後의 一連의 措置 및 앞으로의 南北接觸의 推移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文書라 할 것이다.

## 2. 南北赤十字会談

8.15宣言 다음해인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總裁는 「南北離散家族찾기운동」을 為한 南北赤十字会談을 北韓에 提議했다. 大韓赤十字社의 崔斗善總裁는 「南北間의 家族찾기운동을 具体적으로 協議하기 為하여 가까운 時日内에 南北赤十字社 代表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会談할 것」을 提議했는 바, 同年 8月 14日 北韓側이 이를 受諾해서 祖國의 解放後 26年만에 처음으로 南北間에 直接的인 對話가 이루어졌다.

同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朴大統領은 南北對話問題에 言及하면서 특히 「우리 韓半島 將來에 관한 문제는 列強이나 國際潮流가 解決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主體的인 努力과 自主的인 決斷에 있다」고 強調하였다.

이는 同年 「키신저」의 歷史的인 中共訪問과 周 - 「키신저」会談

後에 周恩來의 「韓國戰의 休戰協定締結을 平和協定으로 転換시켜야 한다」라는 發言이라면가 以後의 美·中共 首腦會談에서 韓國문제도 論議될 전망이 컸던 当時の 事件에서 統韓問題에 관한 韓民族의 自主的 決定權을 内外에 公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70年 朴大統領의 8.15 声明 以後 南北離散家族찾기운동을 為한 南北赤十字會談이 「人道的見地」에서 提議된 것이라면 以後 7.4 共同聲明, 6.23 平和宣言 및 不可侵協定締結 提議는 統一問題에 관한 劃期的方案이라 할 것이다. \

### 3. 7.4 南北共同声明

1972年 7月 4日 「서로 上部의 뜻을 반들어」「서울」의 情報部長 李厚洛과 「平壤」의 組織部長 金英柱의 共同名義로 서울과 平壤에서 同時に 發表된 同聲明은 統一問題에 관하여 双方間に 合意된 基本方針을 밝힌 것으로 이 문제에 관한 基本文書라 할 것이다. 이 성명의 결과 南北韓間의 對話는 人道的次元을 넘어 政治的次元으로 推移했음은 물론이다.

「南北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祖國統一를 推進시키기」 위한 目的으로 双方間に 「完全한 意見의 一致」를 본 7個項으로 된 同聲明의 主要骨字는 다음과

같다.

- ① 外勢依存 없이 平和의 祖國統一 于先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民族의 大團結 図謀
- ② 相互 中傷 않고 軍事衝突 積極防止
- ③ 多方面的인 諸般交流 實施
- ④ 南北赤十字會談 成事되도록 積極協調
- ⑤ 統一 위한 南北調節委員會 구성

#### 4. 6.23 平和宣言

1973年 6月 23日 朴正熙大統領은 70年 8.15 宣言에서 밝힌 바 있는 궁극적인 祖國統一에 앞서暫定的인 南北韓의 平和共存, 平和競爭을 為한 与件의 具體的 造成를 為해 7個項에 達하는 特別宣言을 發表하였는 바, 그 풀자는 다음과 같다.

- ① 祖國의 平和統一 위해 모든 努力 계속
- ② 韓半島平和維持, 南北韓間의 內政不干涉
- ③ 誠實斗 忍耐로 南北對話 계속
- ④ 緊張緩和 위해 서라면 北韓의 國際機構 참여에 不反對
- ⑤ 統一에 障碍안되면 南北韓 「유엔」同時加入 不反對
- ⑥ 互惠平等原則 아래서 모든 國家에 門戶開放
- ⑦ 友邦과의 既存紐帶 더욱 張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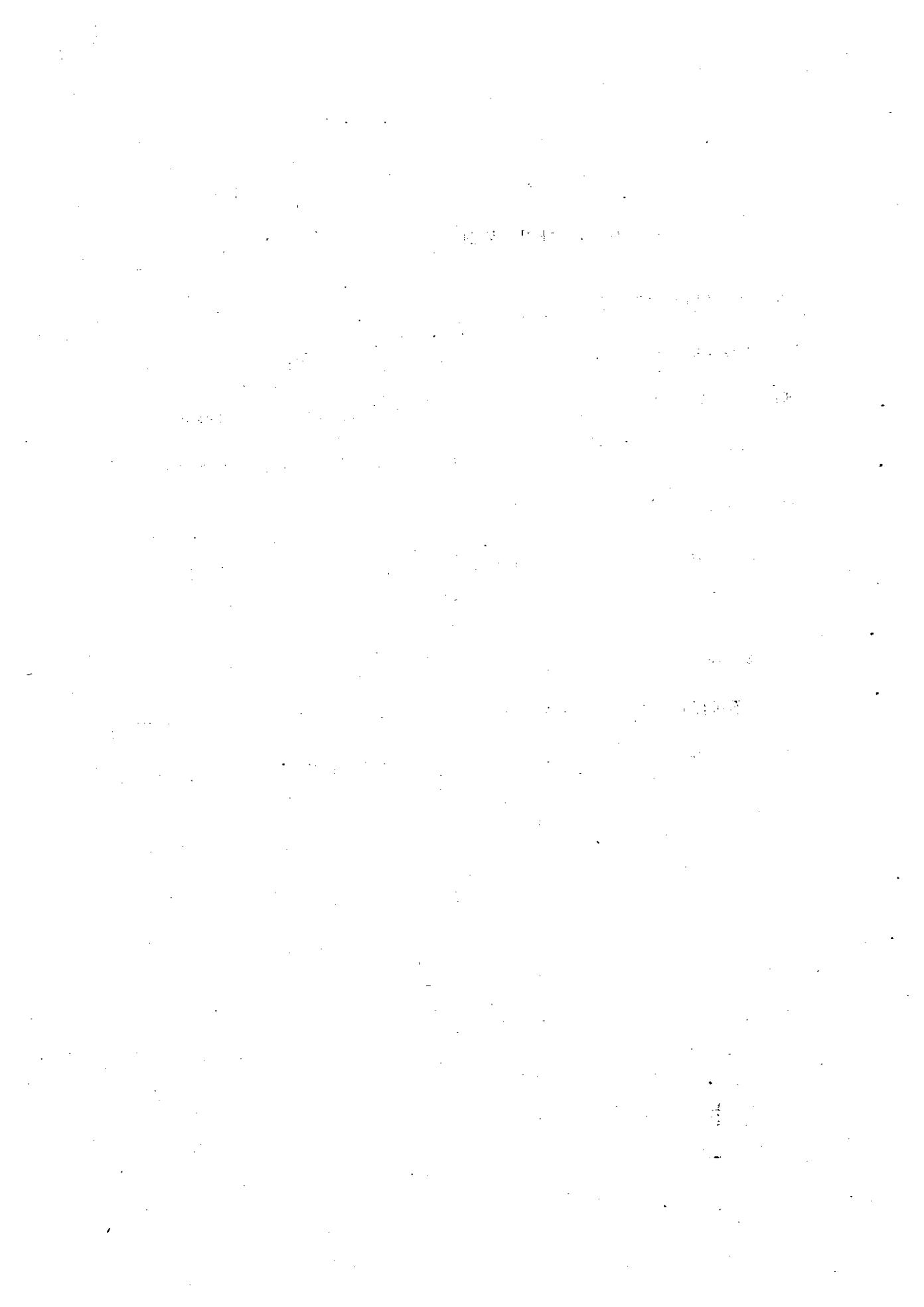
以上의 7個項中에서 本稿와 관련해서 가장 主要한 것은 第四, 五項인 바, 이는 뒤에서 다시 檢討하기로 한다.

### 5. 不可侵協定締結提議

1974년 1월 18일 年頭記者會見에서 朴大統領은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서 南北間에 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不可侵協定提案은 다음의 세가지 要素를 主要骨字로 하고 있다.

- ① 相互間에 武力侵略意図의 明示的拠棄
- ② 内政干涉排除
- ③ 休戰協定存續

이 不可侵協定締結 提議도 6.23宣言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의 統一에 앞서 暫定的의 南北間의 平和共存을 為한 具體的 与件을 造成하기 為한 것이라 할 것이다.



第3章 分斷國의 地位에 관한 法的考察



### 第3章 分斷國의 地位에 관한 法的考察

總論部分에서 記述했듯이 分斷國의 問題는 2次大戰後에  
生成된 比較的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現在로는 이에 관한 國際  
法上의 確立된 法制度는 存在하지 않고 現在 形成過程에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서는 同問題에 관해서 西獨에서 提示된 代表的學說 몇가지를  
檢討한 後 다음에 이를 背景으로 하여 韓半島에 있어서의 南北문  
제를 法的觀點에서 分析 考察하고자 한다. 이러한 法的考察의 目  
的是 分斷國의 法的地位에 관한 어떠한 定立된 學說을 提示하려는 意圖는  
물론 아니고 그 基本目的은 어디까지나 本稿의 「테마」인 東西獨  
交流事例와 韓半島에의 通用可能性 또는 限界性을 抽出해 내려는데  
있는 것이다.

#### 第1節 西獨에 있어서의 分斷國의 法的地位에 관한 學說

西獨에서 分斷國의 地位에 관해 提示된 代表的學說로는 縮少國家  
說 ( Schrumpft Staat Theorie ), 核國家說 ( Staat Kern-theorie  
또는 Kern Staat theorie ) 및 치붕 ( 국가 ) 說 ( Dach-theorie ) 이

있다. 10)

### 1. 縮少國家說 (Schrumpft Staat Theorie)

이 說은 分斷國家에 있어서 分斷地域만이 分斷以前의 國家의 合法的 繼承者로서 國際的으로 이를 代表할 수 있으나 그 領土의 併위는 現在 實効的 관할권이 미치는 地域으로 限定되어 分斷地域은 이렇게 領土的으로는 縮少된 形態로서 以前國家의 계승자로서 하나의 完全한 國家를 形成한다는 것이다.

이 說에 依할 것 같으면 他分斷地域은 必然的으로 하나의 獨立된 外國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招來한다. 따라서 兩分斷地域間의 궁극적인 統一은 결국 獨立한 兩國家間의 自由意思에 基한 併合, 國家聯合의 方式이나 一國에 依한 他國의 合併方式 등에 依存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現在 韓國, 独逸, 越南中의 어느 分斷國도 一分斷地域만으로 完全한 國家를 形成한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는 國家는 없고 보면 이 說은 現在의 分斷國의 地位를 正確히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다. 現在 東獨이 主張하는 「二民族。二國家論」이 이에 상당히 가까우나 東獨이 独逸帝國파의 紐帶를 否定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 說과 基本的인 차이가 있다 하겠다.

## 2. 核國家說 (Kern Staat Theorie)

이 說은 西獨政府가 「一民族・二國家」論에 立脚하여 「할슈타인」原則을 廢棄하고 東獨과 基本條約를 체결할 때 까지의 西獨政府의 公式的立場을 代辯한 것이기도 하다.

이 說에 依하면 現獨逸의 領土의 범위는 1937年에 確定된 独逸帝國의 領土와 同一하며, 現在는 領土의 관할권의 범위는 축소되어 있는 西獨이 独逸帝國의 正統的 繼承者로서 一旦적으로 全獨逸을 代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核國家說은 憲法裁判所의 政教條約 (Concordat) 判決에서도 明示的으로 聲明된 바 있는데 同判決은 “基本法에 依해 創設된 組織(西獨)의 効力이 미치는 범위는 緊정적으로 独逸帝國 領土의 一部에 限定되나 그로해서 帝國과 独逸聯邦國과의 同一性이 否定되는 것은 아니다.”<sup>11)</sup>

이와 같이 西獨과 独逸帝國이 同一하다는 立場에서는 東獨의 國家性은 当然히 否定되고 다만 “피뢰정권” 혹은 “소련占領地域” 으로서의 地位밖에 못가지게 된다. 이러한 核國家說은 다음의 3要素를 그 論拠로 하고 있다.

① 独逸帝國은 1945年 以後에도 그대로 存続한다는 것이다.

이는 1945年的 四大國에 依한 独逸의 分割占領은 엄격한 의미의 分割 (Dismemberment)이나 完全占領 (debellatio)의 의사에

• 例題 10.1.1 例題 10.1.2 例題 10.1.3

③ 質地는 물질의 특성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② 葉綠素이 주제로 국민이 자유로운 청중에게 소개되는 예술이다.

이宣言은 1954年 1月 3日의 London 9個國會議後의 議定書에 다시 채택되었으며 以後 NATO 국가들에 수락되고 1954년 西獨의 NATO加入에 관한 「파리」條約의 전문에採択됨으로써 NATO加盟國을 구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核國家理論은 「할슈타인」 원칙 포기와 特히 東西獨기본 조약의 체결로 東西獨관계에 관한 限客觀的妥當性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 3. 지붕(국가)理論(Dachtheorie), 혹은 法的存在가 지속되는 帝國內의 特定部分秩序理論(Eigenständige Teilordnung im Fortbestehenden Reich)

이說은 내용의 경토에 앞서 미리 밟혀 둘 것은 同說이 現在의 両獨關係의 基本의理 理論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說의 骨子는 独逸帝國은 分斷에도 不拘하고 法的으로는 全体國家(gesamt staat)로 存續하나 政治的 行為能力이 欠如되어 있다. 이러한 全獨逸에 대해 東西獨의 어느 지역도 同一性을 主張할 수 없으며 따라서 両獨은 相互 同等한 地位에 있게 된다. 全獨逸의 行為能力이 欠如되어 있는 동안은 両獨은 각자의 領土위에서 그리고 그들의 固有한 問題에 관해서는 國際的 國內的 관할권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權限은 각 部分질서가 엄격한 의미의

国家로서 行事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部分질서도 全獨逸과 同一  
視될 수 없으므로 单独的으로 全獨逸 名儀로 새로운 權利 義務를  
負担하거나 既存의 權利를 포기할 수 없으며 國際事項에서 单独代  
表權을 主張할 수도 없다. 각 部分秩序의 全獨逸과의 関係는 地  
域政府의 地位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說의 基本的 論拠는 물론 全獨逸이 法的으로는 그대로 存統  
한다는데에 있다. 다만 그의 存在를 具体化한 기판이 없으므로  
政治的行為能力이 欠如되어 있다는 것이다. 换言하면 全獨逸은 權  
利能力의 主体이나 行為能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  
기서 全獨逸의 存統根據는 獨逸民族의 单一性에서 찾고 있는 바  
獨 基本法의 權威者인 Mangoldt-Klein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독일을) 계속 存統케 하는 要素는 中央權力기구의 欠如状  
態는 外部의 強制의 결과로 受忍하고 이러한 강제가 제거되는 경  
우 이러한 흄결상태를 是正하며 暫定的으로는 國家의 中央意思 (ein  
staatlicher Zentralwille)를 독일存統의 始發點으로 受諾하고  
法的으로 保存하려는 독일국민의 不變하는 意思 및 이에 부응하는  
意識인 것이다. 이러한 意思와 民族意識은 독일국민 모두에게 항  
상存在해 왔다. ……換言하면……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독일인의 民族意識은 통일된 독일의 市民으로서의 民族의식이지 단순히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그것은 아니다.

独逸帝國은 이러한单一, 凡独逸的民族意識이 소멸하는 순간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으로 分割되어 소멸할 것이다」<sup>13)</sup>

이에 대해서는 独逸國民의单一民族的 감정을 全独逸 촌속의 法的基準으로 하는 것이 너무 主觀的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14)</sup>

以上으로 分斷國 地位에 관한 西獨의 代表的 學說 몇가지를 검토하여 보았는 바 다음에는 이를 배경으로 南北接觸問題를 法的側面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 第2節 南北接觸에 관한 法的考察

韓國의 韓半島의 分斷 및 그 결과로 形成된 南北韓 法的地位에 관한 태도는 大韓民國 政府의 唯一合法性이라는 基本原則으로 一直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政策은 7.4南北共同성명, 6.23平和宣言 및 1.18南北韓不可侵協定締結 提議 以後에도 기본적으로는 고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以上의 三大措置와 관련되어 北韓에 대해서 그以前과는 다른 法的地位가 부여되지 않았는가는 一但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 唯一合法性原則

既述한 바와 같이 韓半島問題에 関해 当時 軍事占領當局이 美  
·蘇間に 合意를 보지 못하고 1947年 美蘇共同委員會가 決裂되자  
韓半島問題는 「유엔」에 上程되었으며 이에 「유엔」총회는 「유엔」  
當時韓國委員團의 監視下에 全韓國에서의 選舉가 実施되어야 하나  
그것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同委員團이 接近可能한 南韓地域에서만이  
라도 選舉監視에 임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sup>15)</sup>

이 決議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南韓地域에서 選舉가 実施  
되고 8月 15日을 期해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었음을 内外에 公布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엔」총회는 1948年 12月 8日의 決意  
에서 大韓民國政府는 國民의 自由로운 의사에 基한 선거의 결과로  
수립되었으며 그 理由로 韓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라고 宣言하고 이어  
서 「유엔」회원국 및 其他國家는 韓國과의 外交수립에 있어서 이  
러한 사실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sup>16)</sup> 이 決意는 1965年 韓  
日기본조약 第3條에서도 再確認된 바 있다.

이러한 「유엔」총회의 1948年的 決意가 大韓民國政府의 唯一合法  
性 主張에 基本的根柢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유엔」총회의 決

意는 大韓民國政府의 唯一合法性을 承認한 것 이므로 國가로서의 韓國의 문제는 如前히 남는 것이다. 即 1948 年에 大韓民國이라는 새로운 國家도 同時에 탄생했는가 혹은 旣韓國을 繼承한 政府인가의 問題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해 필자는 旣韓國은 1910 年 韓日合併에도 不拘하고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1948 年 수립된 大韓民國政府는 旣韓國을 계승한 정부라는 입장이다. <sup>17)</sup>

## 2. 7.4 南北共同声明, 6.23 平和宣言 및 不可侵協定 締結 提議

이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우선 위의 三大指證가 北韓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고 그에 대한 답변이 否定的일 때 北韓의 地位는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1) 우선 7.4 南北共同声明부터 考察하기로 한다. 同声明이 北韓의 승인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는 이에 앞서 同声明이 条約인가에 대한 검토가先行되어야 한다.

即 同声明이 단순히 政治的 意圖를 밝힌 엄격한 의미의 성명서라면 승인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同声明은 筆者の 見解로는 条約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sup>18)</sup>.

할 必然的인 理由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國際法上의 조약  
으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國際法은 항상 独立된 国家間의 関係만을  
規制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例 칸대 聯盟, 聯邦 相互間의 関係가  
國際法에 依해 規制되는 경우는 많은 것이다. 끝으로 承認은 原  
則的으로 그 승인대상국을 国家로 인정하라는 意思表示이므로 特定  
한 경우에 默示的承認行爲로 간주될 수 있는 特定行爲도 明示的인  
反對意思表示에 依해 그러한 可能性이 배제된다는 것이다.<sup>20)</sup> 그  
런데 朴大統領의 不可侵協定解結提議 以後 金總理는 이것이 北韓의  
승인을 意味하는 것이 아님을 明示的으로 宣言한 바 있다.

(2) 以上으로 7·4 南北共同声明以後의 一連의 措置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大韓民国으로부터 国家로서의 承認을 받지 않았음을 明白하여 졌다고 하겠으나 이들 措置 以後의 唯一合法政府인 大韓民国에 대한 北韓의 法的地位 문제는 如前히 未解決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問題의 解決方法으로 西獨의 「一民族·二國家」論에 立脚한 「지붕(국가)理論」을 採用할 수 없음은 分明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南韓이 唯一合法政府主張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大韓民國政府의 唯一合法性과 北韓에 대한 「北

다면 同 声明의 前文에서 「平壤」의 金某 組織部長, 朴某第二副  
首相 등의 表現이 있고 同声明은 「서로 上部의 뜻을 받들어」公  
表되었다는 点을勘案하면 同 声明의 결과 大韓民国은 北韓의 事  
實上의 政治要因으로서의 存在는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23 平和宣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南北韓 유엔 同時  
加入」條項이다. 北韓의 유엔加入 不反對는 北韓에 대한 默示的  
承認이 아닌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도 역시  
그러한 可能性의 否定이다. 그것은 承認은 個別的行爲이고 또한  
原則的으로는 承認意思의 明示的인 意思表示 이기 때문에 國際機構  
에 依한 集團的決定과는 區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19)</sup> 따라서 6.  
23 平和宣言에 依해서도 北韓의 승인문제는 원칙적으로 제기되지  
않고 다만 政治集團으로서의 그 存在가 좀 더 부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1974年 1月 18일자의 朴正熙 大統領의 封北韓 不可侵  
協定 締結提議가 北韓의 承認도 内包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답변도 역시 原則的인 그러한 可能性의 否定  
인바,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 理由에서이다. 于先 南北韓間에 체결  
될 不可侵協定 自体를 嚴格한 國際法의 의미의 條約으로 간주해야

方을支配하고 있는共產政權」으로의事實上의認定과를 어떻게調和시킬 수 있겠는가인 것이다.

7.4南北共同聲明 以前까지는 北韓은 「叛徒集團」으로 38度線以北을事實上支配하고 있는共產政權으로서의 인정도拒否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時期까지는 아마도嚴格한核國家理論이南北關係에관한 가장適切한理論的背景이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7.4南北共同聲明 以後 北韓에 대해「事實上의共產政權으로서의地位가認定된以上核國家理論은 이제는 그에대한修正을加하지 않는限 타당한理論일수는없는것같다. 아마도現時點에서可能한 하나의理論으로는內亂說이있지않을까한다. 이說에依하면北韓은唯一合法政府인大韓民國에 대하여叛徒集團으로서의性格을 가지며 이러한叛徒集團으로서의北韓의事實上의存在가 7.4南北共同聲明 以後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內亂說은 7.4聲明 以後의南北關係를비교적無理缺이說明해줄수 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內亂狀態에 있어서는母國政府와叛徒集團間의境界線은 항상流動的인데反해서現在의南北韓間의境界線은固定的이란는데에 그가장基本的인問題点이 있다.

이를 補完하기 為해서 西獨에서 主張되고 있는 冷戰的內亂說  
(Kalter Bürgertheorie) 를 援用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冷戰  
的內亂이라는 問題는 적어도 伝統國際法上으로는 생소한 문제로 이  
에 대해 確立된 法原則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데에 또 다른 문제점  
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7.4 南北共同聲明 以後의 南北關係에 관한 適切한 法理論의  
구성은 가장 緊要한 問제의 하나라 하겠다.

以上에서 東西獨 및 南北韓間의 接觸關係를 法的, 政治的側面에서  
考察하여 보았다. 다음에 위에서 考察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東西獨交流事例의 韓半島에의 適用可能性과 그 限界性에 관하여 검  
토하고 本稿를 전부 마치기로 한다.



第4章 東西獨交流事例의 韓半島에의  
適用可能性과 限界性



## 第4章 東西獨交流事例의 韓半島에의 適用可能性과 限界性

이미 總論部分에서 言及했듯이 分斷國에 있어서 兩分斷地域間의 접촉에 있어 출발점이 되는 기본명제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다. 그것은 兩分斷地域間의 接触과정에서 分斷의 固定性, 심지어는 相互 独立된 二個 國家의 形成이라는 否定的 결과를 야기하지 아니하고 分斷의 해소와 궁극적으로는 分斷의 終結을 即 分斷國의 統一을 成就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基本命題는 現存하는 모든 分斷國에 타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기본명제는 공통적인 것으로 하면서도 各分斷國의 客觀的 与件의 差異로 因해 接触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表現方式이 多樣化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政治的 法的 侧面에서의 東西獨交流 事例의 韩半島에의 適用可能牲의 문제는 결국 다음의 두가지 문제도 암축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韓國의 경우에도 西獨과 마찬가지로 「할슈타인」原則의 포기와 「一民族・二國家」論에 입각하여 南北韓間의 관계를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확실히 西獨의 경우는 독일의 現与件을 감안하여 보면 上述한 할슈타인 原則의 포기와 一民族・二國家論에

입각한 소련을 포함한 東歐와의 関係改善 및 東獨과의 基本關係의 규제조치는 現實的인 方案으로 國際社會에서 환영을 받고 또한 독일국민의 상당한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統一問題와 관련되어 現在 독일이 처해 있는 여전과 한국의 여전이 비슷한 성격의 것이라면 한국의 경우도 一民族・二國家論에 의거한 현실적인 方式이 一應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위에 제기한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과 독일의 分斷문제의 共通点과 相異点을 比較하여 볼 必要가 있다.

### 1. 共通点

- ① 兩國의 分斷의 연원은 軍事的占領에서 始作되어 그것이 以後 東西兩陣營間의 冷戰의 결과로 고정화되었다는 것.
- ② 兩國의 分斷地域間의 関係는 比較的 安定的이라는 것 그러나 그 安定度의 차이는 거의 質的인 差異은 간파할 수 있는 사실이다.

### 2. 相異点

- ① 우선 가장 重要한 것으로 独逸의 경우 統一問題는 美英仏蘇四大國의 留保된 權利事項이라는 것이나 이에 反해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韓民族의 自立的決定에 속한 문제이다.<sup>21)</sup>

② 分斷된 独逸은 이미 歐洲의 既存秩序로 되어 4大国을 包  
含한 東西歐 전영의 어느 국가도 독일의 통일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일반적인 理由로  
서 현재 分斷된 상태에서 西獨이 西方 전영의 第三位의 공  
업국으로 되고 東獨 역시 공산진영의 首位級의 공업국으로  
성장한 결과 이러한 東西獨이 統合되어 유럽의 中原을 차지  
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의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4大国의 경우를  
보더라도 불란서는 背仏전쟁과 一, 二次大戰의 경험으로 二次  
大戰 後는 독일 분할이 그 政策이었다 할 것이므로 독일 통일  
이 환영할 바가 아닌 것은 자명하다. 소련이 西獨에 依한  
통일로 現 歐洲의 세력균형의 변화에 반대할 것임은 분명하  
다. 美国의 경우는 現 유럽 安保体制의 유지는 NATO 會員國  
인 西獨으로서도 우선 充分하고 또한 分斷된 西獨으로 因해  
西獨에 대한 영향력의 行使가 보다 용이하므로 독일통일은  
적극 추진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反해서 韓半島는 그 통일된 國力으로 인해 주변국가가

⑤ 現在 莫無「一民族·二國家」論點，對外對內，西強東弱，主權國家多數是「多數民族國家」，「單一國體」，「單一民族」，是附加

⑦ 摘要。中原文書名稱及內容摘要。

(3) 물결은 늘었고 그대가 봉파되었을 때 — . 二次大戰을 與暨戰時  
부록은 늘었고 現在 改編의 平和說明을 選明敘也。 反面에  
부록은 늘었고 現在 改編의 平和說明을 選明敘也。 現在는 온전不安

어도 독일의 통일은 不可能하다는 전제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前提위에서는 「一民族·二國家」式 해결方法은 暫定的인 最善의 方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관련되어 한국이 처하고 있는 여건은 독일과는 달리 本質的으로는 궁경적이다.

이렇게 西獨과 여건을 달리하는 한국으로서는 西獨의 先例에도 不拘하고 한국적인 「할슈타인」 原則의 公式的 폐기나 「一民族·二國家」方式을 채택할 理由도 없고 채택하여서도 아니된다. 여기에 독일方式의 한국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적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승인행위는 原則的으로는 個別的 明示的 意思表示이다. 또한 既存하는 세계 150余個國의 國家中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 국가가 완전한 국가가 되는 가의 기준도 存在하지 아니한다. 西獨이 独逸內에 2個의 국가의 存在를 認定하면서도 독일民族의 单一性 원칙 위에서 東西獨이 相互 外國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東獨을 國家로 승인하고 있지 아니함은 國際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sup>22)</sup> 그러나 장차 적어도 西獨을 승인하고 있는 국가와 同數의 國家가 東獨을 승인할 때에 西獨이 계속 東獨은 國際法上의 국가가 아니라고 主張할 수 있을가는 아주 의문이다.<sup>23)</sup> 이러한 理由에서 필자는 한국의 경우는 「할슈타인」

原則의 公式的 폐기는 삼가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확실히 東西獨의 交流事例는 従來 韓半島문제 处理에 많은 구체적인 方向을 제시해 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現時點에 이르러 적어도 政治的, 法的 側面에서는 東西獨의 接触關係는 「一民族・二國家論」에 입각한 両獨基本條約의 채결과 더불어 한국에의 원용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 [ 註 ]

- 註 1) 本稿에서 脚註部分이 차지하는 比重이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그것은 本論의 論理展開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本論의 전개에 있어 必要한 事項도 不可欠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脚註部分을 占用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은 미리 諒知하기 바라는 바이다. 또한 外國著者의 見解의 引用時 英文의 경우에 따라서는 原著者의 見解에 充實을 기하기 為해 原文 그대로 引用한 경우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 註 2) 筆者는 東西獨 南北韓등의 用語를 意識的으로 피하고 독일, 韓國등의 表現을 使用하였는 바, 그것은 後者が 分斷國도 적어도 法的으로는 如前히 하나의 国家임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 註 3) 中国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分斷國의 법주에 속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本質的으로 다음의 두가지 理由에 基因한다. 우선 韓國, 독일, 월남등의 分斷국과 比較해서 自由中國과 中共의 形成過程이 相異하다는 点과 보다 本質的으로는 蔣介石政府軍의 上陸 以前의 대만의 法的地位 문제인 것이다. 다만 이 問題는 本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므로 더 以上 부연하지 않기로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參照: G. Cory, *Le statut juridique des Etats divisés*, Paris, 1967, PP. 22-37. T.P. Morello, *The international legalstatus of Formosa*, The Hague, 1966, PP 94 et ss.

註 4) 韓國의 경우도 6. 25 事變을 거쳤다는 点에서는 越南과 마찬가지로 「内争型」이라 할지도 모르겠으나 両국의 分斷이 되는 時点은 어느정도 相異하다 하겠다. 越南의 경우 法的인 分斷時点은 1954年의 「제네바」協定 締結時인데 반해서 韓國의 경우는 1947年 美蘇共同委員會의 決裂 以後 1948年 38 度線 以南과 以北에 各己 政權이 수립되는 때이며 1953年の 休戰協定은 以前狀態 (Status quo ante) 에로의 환원 또는 그의 再確認行爲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註 5) 社会 文化 經濟등의 分野에서의 交流關係는 特히 東西獨資料等 第二卷 참조

註 6) Willy Brandt, Friedens Politik in Europa, Frankfourt 1968, pp. 147 - 148

註 7) 이에 관한 「브란트」의 연설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實際政治의 課題는 双方이 現在의 난관을 극복하고 民族의 单一性을 어떻게 維持해 나가느냐 하는데 있다. 独逸사람들은 그들의 言語나 그들의 荣光과 不幸을 가진 歷史에 의해서만 결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独逸안을 집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 안에 그리고 歐洲안에서의 平和라는 共同的인 課題와 責任을 가지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이 수립된지 20년동안 우리는 独逸民族의 앞으로의 分離生活을 막아야 하며 그러므로 規制된 共存 (Nebeneinander) 을 거쳐 相互体制간에 배우는 共存 (Miteinander) 에 이르도록 試圖하여야 한다. … 西獨政府는 … 東獨의 内閣에게 政府의

次元에서 條約上 合意되는 協力を 초래할 차별 없는 兩側의  
協商을 제의한다. 東獨에 대한 西獨政府의 國際法的 承認은  
考慮될수 없다. 비록 独逸연에 두개의 国家가 存在하고 있  
지만 그 두 国家는 相互間에 外國이 아니고 그들 相互間의  
關係는 다만 特殊한 性質의 것에 불과하다. 西獨政府는 先  
任者の 政策과 연결하여 東獨에 대해서도 武力의 行使 또는  
威脅을 相互間에 포기하는 것에 대한 拘束的인 協定을 체결  
할 용의가 있음도 宣言하는 바이다.

註 8) 「할슈타인」原則에 관해서는 特히 參照.

R. Papini & G. Cortese, *La rupru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t ses consequences*, Paris, 1972, PP.

47-72.

註 9) <兩獨間의 関係正常化 및 平等關係樹立協定 20個項目  
(1970.5.21)>

「브란트」独逸聯邦共和國首相은 70.5.21 「캄센」會談、開會剪  
頭 演說을 通해 兩獨間의 関係正常化 및 平等關係樹立協定의  
締結을 위해 다음과 같은 20個項目를 提案하였다.

- ① 憲法上 独逸國民의 单一性強調로 兩國關係改善을 위한  
協定締結.
- ② 同 協定은 双方 立法府의 承認이 必要.
- ③ 兩獨關係는 人權原則, 均衡, 友好的 共存, 無差別 原則 및  
國際法의 一般規範에 立脚해야 함을 宣言.
- ④ 双方 武力行使 抛棄宣言, 領土保全, 國境線 尊重.
- ⑤ 兩側은 一方의 對內的 統治權에 関係되는 事項에 있어서  
獨立과 自主性 尊重.
- ⑥ 東・西獨中 어느 한便도 다른 便을 위한 交渉을 할 수

없고 또 이를 대표할 수도 없음.

- (7) 双方 어느 한便도 独逸領土内에서의 戰爭을 再發해서는 안됨을 宣言.
- (8) 双方 어느 한便도 諸国家의 平和的 協調를 妨害할 可能性이 있는 如何한 協商도 해서는 안됨.
- (9) 双方 軍備縮小를 위한 努力支持의 意思強調.
- (10) 両獨間의 協定은 独逸国民이 2次大戰 結果로 分斷된 國土에서 单一民族이라는 特殊한 处地를 出發点으로 해야됨.
- (11) 伯林 및 独逸問題는 美·英·仏·蘇의 特殊權利와 義務에 抵触되어서는 안됨.
- (12) 伯林과 独逸에 関한 4個國 協定의 尊重은 勿論 伯林 西獨間 問題도 尊重.
- (13) 東·西獨 両側住民의 不便을 덜기 위해 両側이 立法上의 紛糾 除去努力, 双方의 主權行使는 自己領土内에만 局限된다는 原則에 合意.
- (14) 双方 相互間의 旅行交通을 더욱 容易케 하는 措置 및 移動의 自由를 위해 努力.
- (15) 家族分散으로부터 發生한 諸問題의 解決에 努力할 것.
- (16) 接觸地의 住民들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問題들을 이웃사람으로서 解決해야 함.
- (17) 双方 交通, 電信, 情報交換, 科学教育, 文化, 社會問題, 「스포츠」等의 諸分野에 있어서 相互利益을 위한 協調強化.
- (18) 双方의 現存 貿易協定 및 合意事項을 尊重할 것.
- (19) 双方 閣僚級 全權代表가 이끄는 常設代表部를 相互 両側首都에 設置할 것.
- (20) 両獨間에 合意된 協定의 基礎위에서 國際機構에 있어서의 東·西獨 代表들의 会談資格을 規定하기 위한 必要한 協

議를 함.

註 10) 이 問題에 관해서 다음의 著書는 필히 參考할만한 것이다.

G. Scheuner, Die Rechtslage des geteilten Deutschlands;  
Mangoldt-Klein, Das Bonner Grundgesetz; G. Caty, Le  
Statut juridique des Etat divises

註 11) B. Verf. G.E. Bd 6. S:338, G. Caty, op cit. p. 77에서  
再引用.

註 12) 그 근거로는 1945年의 四大国 베르린 宣言前文과 同時 8

月의 4大国 管理委員會 布告文 第 1, 2號를 들고 있다.

그런데 베르린 宣言前文은 4大国에 依한 「最高統治權의 장  
악은 독일의 合併效果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明示的으  
로 宣言하고 있으며 布告令 第 1, 2號도 「独逸」 또는  
「独逸國」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1945年 独逸諸國은 소멸되었다는 견해 :

Kelsen, The Legal Status of Germany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Berl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註 13) Mangoldr-Klein, Das Bonner grundgesetz, P. 32

註 14)例컨데 G.Caty 는 单一民族이라는 표준은 그 主觀性 때문에  
法的基準은 될수 없으며 따라서 全独逸의 存續根據는 美·英  
仏·蘇 4大国이 아직도 独逸統一에 대한 궁극적 責任과 權  
利를 留保하고 있다는 점에 구하고 있다.

G.Caty, op. cit. pp. 100-112

註 15) 유엔總會決議 112(II) (A). (B), 1947년 11월 14일

註 16) 유엔總會決議 195(III), 1948.12.12

註17) 旧韓國이 消滅되지 않았다는 主張을 다음의 두가지 理由를 그 論拠로 하는 것이다. 그 第一의 理由는 1910年의 韓日合併條約은 強制에 依한 것이기 때문에 無効이며 따라서 그에 基한 韓日合併行爲 自體도 無効라는 立場이다. 이와 関聯해서 1965年의 韓日基本條約 第2條는 「1910年 8月 22日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主張과 달리 1910년의 韓日合併條約이 有効하다고 인정하드라도 旧韓國의 存続原則을 復活現狀에 依해 說明할 수가 있다. 即 旧韓國은 1910年에 一時消滅되었으나 1945年 解放파 더불어 다시 権利能力의 主体로 復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復活現狀은 二次大戰後의 「에티오피아」, 「체코」「오스트리아」에서 그 具體的 實例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參照。

G.Caty, op.cit., pp.105 et ss.

註18) 그 主要한 理由로 同声明에서 双方의 公式名称 が 使用되지 않았고 各者의 職責이 記載되지 않았으며 조약의 一般形式인 條文形式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끝으로 法的인 権利義務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一般的이고 抽象的이라는 것이다.

註19) 유엔事務總長의 메모랜덤, 1950.

註20) 承認行爲는 承認國의 自由로운 의사에 의해 決定되는 個別的行爲이며 또한 이는 원칙적으로 承認意思의 明示的意思表示이기 때문에 特定한 경우 特定한 行爲가 默示的承認으로 간주

될 수 있는 경우에도 明示的인 反對意思의 表示에 依해 그  
可能性은 排除되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몇몇 反對的인 少數見解에도 不拘하고 확립된  
國際法原則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제 이에 관해 代表的인  
主張 두가지만을 引用하기로 한다.

"Political recognition of a foreign state or government is primarily a matter of intention. Such recognition may be express or implied, but to bring about recognition by implication the act must be an unequivocal one and of such character as clearly to indicate that recognition was intended or is inescapable, as for example, by the exchange of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rs, the negotiation of a treaty, etc."

-G. H. Hackworth, Legal adviser,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Dec. 13, 1940.

"...As often happens, the doctrine of implied recognition has been more conspicuous in the writings of authors than in the practice of states. In the literature of international law it has often appeared under the more innocuous name of modes of recognition. It is true that recognition may be granted in a manner other than an express and formal declaration to that effect. In this sense we are justified in referring to various modes of recognition. But it is permissible to speak of modes of recognition only so long as we keep in mind the fact that we are entitled to treat a particular act as amounting to recognition only when there is no doubt as to the intention to recognize. Otherwise,

and this is what happens with perplexing regularity, we run the danger of introducing the vagaries of implied recognition through the backdoor of modes of recognition. Recognition is primarily and essentially a matter of intention. Intention cannot be replaced by questionable inferences from conduct. Such inferences particularly inappropriate when the general attitude of the State in question points to its continued determination to deny recognition.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PP. 370-371, 405-406.

註21) 이려한 四大國의 独逸統一에 대한 궁극적인 権利는 1954 年의 法리條約 1955年의 独(東獨). 蘇條約과 1972年의 四大國 「베르린」宣言에서 각각 明示的으로 유보된 바 있다.

註22) 脚註 (18) 과 (19) 參照

註23) Quincy Wright, Some thoughts about recogni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50.